

2016. 9. 5.

정부행정 주간 이슈

미래정치센터 고광용 연구위원

- 전자정부 세계 최고 수준 한국...전자결재로 국회 인사청문회 무시하는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은 9월 4일, 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를 방문하고 있는데 국회 청문회에서 장관 임명을 반대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조운선 전 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김재수 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을 전자결재로 임명했음
 - 인사청문회법 상 국회는 청문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 청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박 대통령은 지난 8월 19일, 조운성 장관과 김재수 장관의 청문요청서를 제출했고, 국회는 9월 8일까지 보고서를 채택하여 송부해야 했음. 이 기간 내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 이후에 장관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음. 국회는 공식적으로 9월 2일에 보고서를 송부했고, 이에 따라 적격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이후, 장관 임명이 가능하기에 임명을 한 것임. 국회는 여당 불참 및 야당 단독으로 조운선·김재수 장관후보자를 '부적격 의견 다수'라는 결과의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음
 - 이 일련의 상황을 대통령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에는 문제가 심각함.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통해 행정행위 혹은 사실상, 정치행위를 한 것이 이 번 많은 아님.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청문회 활성화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황교안 국무총리를 통해 전자결재 한 바 있음
 - 우선, 어떻게 장관을 해외에서 전자결재로 임명하는가? 전자결재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일상적'이고 '실무적'인 사안에 국한함. 예를 들어, '휴가신청', '출장 결재 신청', '출장결과 보고', '초과근무 내역서 및 확인대장 결재신청'과 같은 것임. 물론 전자정부가 구현하고 싶은 것은 유비쿼터스로, '언제 어디서

나 쓸 수 있다는 것'인데,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대통령의 결재행위가 국가적으로 중대하거나 삼권분립에 위협이 있을 경우 제한이 필요할 것임

- 둘째, 국회에 대한 무시임. 최근에 국가 중대사에 이루어진 눈에 띄는 청문회 활성화법 거부권과 부적격 의견 담긴 청문회 보고서 채택 이후 장관 임명 강행 전자결재라는 두 번에 걸친 행정행위는 대통령이 입법부를 하위 기관으로 본다는 것임. 국회와의 협치를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권력분립의 수평적 관계가 아닌 행정부 독주의 수직적 협치를 생각하고 있는 것임.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하나의 요식적인 절차로 보고 있음
- 셋째, 국가관료제를 무시하는 처사임. 장관 임명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은 맞지만, 화급을 다투어 신속하게 결정할 사안은 아님. 이미 국가관료제가 각 부처 수장인 장·차관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이 해외에 1~2주 머무는 동안, 장관 임명이 지연되더라도 각 부처의 행정이 돌아가는 데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그러므로 아무리 장관 임명이 급하다고 판단하더라도 해외 순방 와중에 전자결재로 부처 장관을 임명하는 행위는 국가행정과 정부관료제에 대한 모독행위이기도 함. 전자결재의 일반적 대상이 일상적 혹은 실무적인 것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보기에 장관 임명은 일상적이고 실무적인 것인가?

☞ 당의 입장 및 대응

-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를 가진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할 만 하지만,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국가 중대사안을 전자결재로 처리하는 것은 한편 부끄러운 처사임. 장성급 군인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국회 인준을 요함. 물론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치지만,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장관 임명은 일상적인 고위공무원 임명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양태를 보이고 있음. 또한, 대통령의 인상에 대한 국회의 견제권이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고 있음. 대통령의 정무직 장관 인사에 대한 보다 높은 내·외부 견제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그러므로 우선, 국가 중대사안과 삼권분립에 침해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전자결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임명동의안 및 인사청

문요청서 국회 제출, 국회 청문회보고서 채택 후 장관 임명, 차관보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 임명, 재의요구권 제출(거부권 행사)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전자정부법 제3장 전자적 행정관리 상에 전자결재의 대상을 신설하여, 대통령을 포함한 전 행정기관 수준별 전자결재의 권한과 대상에 대한 명시가 필요함. 시행령이나 대통령령 수준에서 정하게 되면, 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기에 전자정부법 상에 명시해야 함

- 둘째,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과 그 권능을 점차 확대해나가야 함. 현재 대통령의 개인적인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한 존중 여부에 따라 대통령의 인사권이 견제되는 상황에서는 실효적인 인사청문회가 되기 어려움
- 그러므로 먼저,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 시, 부적격 판정이 이루어진 장관후보자가 발생할 경우에 현재와 같이 참고사항 정도로 넘어가서는 안 됨, 대통령이 만약 부적격 장관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과 관련 부처는 부적격 사유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해명서와 함께, 관련 우려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장관직 업무수행계획서를 별도로 관련 국회 상임위에 제출토록 해야할 것임. 관련 국회 상임위는 이 해명서와 장관직 업무수행계획서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지 않을 경우, 1회의 추가적인 보충작업을 요구할 수 있게 해야 함
- 다음으로, 현재 장관급 이상의 인사청문회 대상을 차관급 이상, 전국단위 대규모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하는 등 확대할 필요가 있음. 미국 상원의회가 인준하는 공직자는 약 1천명이며, 각 부처별 공식서열 4위까지도 상원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만 인준이 되고 있음